**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타 회사가 당해 회사를 인수, 합병하려 할 경우(내, 외국인 포함)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기타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타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타 이사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6) 주식의 소각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및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경영계획 포함)

2) 신규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제, 개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운영 규정 개폐

10) 이사회 운영 규정 제, 개정

11) 내부회계 관리규정 제, 개정

12) 경영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3. 재무 등에 관한 사항

1) 주식 등(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2) 사채의 발행 및 모집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소각

5) 직전사업연도 말(이하 동일 적용)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소송의 제기

6)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7)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8)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 및 질권의 설정

9)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보증행위

10) 연결자기자본 5% 이상의 금전의 대여

11) 건 별 150억원 초과의 신규차입

12)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4. 기타사항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의(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2)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또는 경영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내부회계 운영실태 및 결과

3. 의결사항 집행결과 및 위원회 활동 실적

4. 경영계획 대 실적 현황 (분기1회)

5. 주요 자회사 및 손자회사(증손회사도 포함)의 경영계획 대 실적 현황 (분기1회)

6. 상장회사 공시(신고 및 보고)사항 및 중요 경영사항의 발생 – 별표 1 참고

7.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0목의 차입거래 이외의 차입

8.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